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3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 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・윤후덕・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,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8호).

법률 제 호

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・시	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・시
행 등) ① (생 략)	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	②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
	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
	리에 관한 사항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